



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

보도자료 **KRX** 한국거래소

· 작성부서	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상장제도팀		
· 담 당 자	팀장 : 장영은 (☎ 02-3774-8700), 팀원 : 정상현 (☎ 02-3774-8703)		
· 배 포 일	2016.6.8(수)	· 배포부서	홍보부 (☎ 3774-4082~4085)

※ 이 자료는 배포 즉시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우량 외국기업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요건 합리화

- ☐ 한국거래소(이사장 최경수)는 코스피시장의 글로벌시장 도약을 위한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 합리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'16.6.13(월)부터 시행할 예정

1

주요 개정내용

가. 외국기업등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요건 합리화

- ① (해외 자회사의 정의 및 범위 현실화) 상장신청인인 외국기업 지배지주회사* 및 외국지주회사**의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회계처리기준상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로 변경

-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자회사에 포함되도록 개선

* 외국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법인

**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기업

- ② (회계처리기준 인정범위 확대)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또는 외국지주회사가 예비심사청구를 할 경우, 해외 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인정범위를 확대

- 해외 자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상장규정상 허용된 회계처리기준*과의 차이에 대한 영향을 별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

* 상장신청인인 외국법인에게 허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은 K-IFRS, IFRS, US-GAAP

③ (DR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 완화) DR(주식예탁증서)의 특성*을 감안하여 주식분산 미달 및 시가총액 미달 기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

* 원주가 상장된 해외거래소와 DR이 상장된 국내거래소간 가격차를 이용한 자유로운 차익거래 가능

○ 상장종목으로서의 최저 유동성 유지를 위해 거래량 미달 및 상장증권수 미달 기준은 존치

나.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상장관리 강화

④ (유통주식수가 일정기준 미달시 매매제한) 감자 등으로 변경 상장시점에서 유통주식수*가 일정수량** 또는 일정비율**에 미달하는 경우

* 유통주식수 = 유동주식수 -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

유동주식수 = 발행주식총수 - 정부등 보유주식수 - 의무보호예수 주식수

** 유통주식수가 10만주(신규상장기준의 1/10수준) 미달,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(분산기준의 1/10수준) 미달

○ (해제) 유통주식수가 일정기준(정지의 3배 수준)* 이상시

* 유통주식수가 30만주 이상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3%이상

2

기대 효과

□ 상장신청인의 다양한 지배구조를 수용함으로써 상장준비를 위한 불필요한 기업구조조정 부담을 해소하고,

○ 해외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소재하는 경우 수용가능한 회계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상장준비부담을 경감하는 한편,

○ 우량한 DR상장 외국기업이 상장적격성과 무관한 형식요건으로 퇴출될 수 있는 상장유지부담을 완화

○ 유통물량 품질 종목에 대한 상장관리 강화를 통해 주가왜곡 및 추종매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

※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krx.co.kr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